

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

항목	통지 내용	의견

<그 밖의 의견>

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사전통지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어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 20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
지방산림청장,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,
국립수목원장,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,
국립산림과학원장,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

귀하